[업무보고]

제282회 임시회

『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』
민간위탁(재계약) 보고

2021. 4.

대구광역시
DAEGU METROPOLITAN CITY

(청소년과)

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(재계약) 보고

제출년월일 : 2021. 4.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보고이유

2021년 3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아동복지법 제38조(자립지원)
-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제10조(위탁운영)
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(재계약)

○ 필 요 성

-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보호종료 후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구자립통합지원센터를 2018년 4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,
-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자립상담 및 주거지원, 자립체험 및 교육, 취업지원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기존 수탁기관에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함

다. 시설현황

○ 명 칭 :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

○ 위　　치 : 중구 국채보상로 655 화성파크드림시티 5, 6층
○ 개소일자 : 2015. 4월
※ 공동모금회가 3년간 시범사업 후 '18.4월부터 대구시가 운영(위탁)
○ 규　　모 : 오피스텔 32실
(자립생활실24, 자립체험실4, 사례관리실2, 상담실1, 당직실1)
○ 운영인력 : 총 6명(센터장 1명, 사례관리사 등 5명)
○ 사업대상 : 보호종료 아동 또는 종료예정 아동

라. 위탁개요
○ 수탁기관 : 사단법인 대구YWCA
○ 위탁기간 : 2021. 4. 1. ~ 2023. 3. 31.(2년)
※ 최초 위탁 : '18. 4. 27. ~ '21. 3. 31.(3년)
○ 위탁방법 : 적격성 심의 후 재계약(위탁)
※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의 완료('21. 1. 22.)
○ 재계약 근거 : 자립지원조례 제10조(한 차례만 가능, 기간은 2년)
○ 위탁예산 : 연간 300백만원 정도(전액 시비)
○ 주요업무
-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 발굴 및 조사, 상담, 교육
-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, 사례관리, 자립계획 수립·지원
-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취업 지원
- 기타 자립통합지원센터 관리·운영 전반

3. 붙임자료

가. 관계법령 1부.
나. 민간위탁(재계약) 계획 1부.

관 계 법 령

1. 아동복지법

제38조(자립지원)

① 국가와 **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**하여야 한다.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 · 생활 · 교육 · 취업 등의 지원
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“자산형성지원“이라 한다)
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.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

제10조(위탁운영)

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아동·청소년의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아동·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**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**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**대구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**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, **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2년**으로 한다.

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3.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19조(재계약)

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치결과, 제29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「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」 운영 민간위탁(재계약) 계획

자립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('21. 3. 31) 전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재계약(위탁) 여부를 결정하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1 위탁 근거

○ 아동복지법 제38조(자립지원)

○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제10조(위탁운영)

○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(재계약)

2 추진 방침

○ 수탁기관의 수행능력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

○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적정성 심의

3 위탁 개요

○ 위탁시설 현황

- 소재지 : 중구 국채보상로 655 화성파크드림시티
- 규 모 : 오피스텔 32실(자립생활관 26, 자립체험관 4, 사례관리실 2)
- 인 력 : 5명(센터장 1, 사례관리사 등 4)
- **수탁기관 : 사단법인 대구YWCA** ('18. 4. 27. ~ '21. 3. 31.)

○ 위탁사무

-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 발굴 및 조사, 상담, 교육
-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, 사례관리, 자립계획 수립·지원
-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취업 지원
- 기타 자립통합지원센터 관리·운영 전반

○ 운영예산 : 연간 300백만원 정도('20년 296백만원)

○ 위탁기간 : 2021. 4. 1. ~ 2023. 3. 31.(2년)

※ 자립지원조례에 따라 한 차례만 재계약(위탁) 가능, 기간은 2년

○ 위탁조건

-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준수
- 기타 사항은 위·수탁협약에 따라 관리·운영

4 추진 절차

일정	구 분	주요 추진사항
11월	추진계획 수립	▪ 위탁사무 내용, 기간, 비용, 수탁자 선정방법 등
12월	위탁사무 심의	▪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 (평가담당관실)
'21. 1월	수탁기관 선정	▪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* 개최
3월	계약체결 및 홈페이지 공개	▪ 위탁계약 체결 및 계약사항 공증 ▪ 수탁기관 선정결과 시 홈페이지 공개
4월	운 영	▪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, 관리 운영, 관리 감독

※ 자립지원조례에 따라 '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'는 '아동복지 심의위원회'로 대체

5 수탁기관 선정

○ 선정방법 :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성 심의

- 1차 : 위탁사무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(민간위탁 운영위원회)
- 2차 : **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(아동복지 심의위원회)**

○ 심의 절차 및 기준

- 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, 심의기준에 따라 채점
- 전체 배점(100점)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
- 총점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결정, 수탁기관 공개모집(별도계획 수립)

※ 수탁기관 심의기준

구 분	심의 항목	배점	비고
총계		100	
수탁기관 운영·관리 적정성	- 감사, 회계감사, 관리.감독, 성과평가 등 결과 -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 기여도 등 - 종사자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 관련 사항 - 민원 발생 여부 및 처리의 적정성 - 회계처리의 적법. 적정성 등	40	
운영실적의 적정성	- 사업계획 대비 추진 실적 및 효과 등 - 신규 사업, 프로그램 개발 실적 등 - 대시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 및 효과 - 만족도 조사 결과 - 위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	40	
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	-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, 타당성, 이행 가능성 등 - 사업계획의 전문성, 실행가능성, 기대효과 등	20	

6 기타 행정사항

○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: '20. 12월

○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심의 : '21. 1월

○ 위·수탁 계약체결 및 공증 : '21. 3월